

프로그램 예산제도에서의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방안*

윤영진** · 김은정***

〈국문초록〉

국가재정법에 의해 2010회계연도 예산부터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 작성이 의무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예산제도에서의 성인지적 분석을 수행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방안은 단계적 접근이다. 1단계에서는 일부 중앙관서를 중심으로 일부 대상사업 또는 각 실국별 하나의 사업을 대상으로 낮은 수준에서 분석할 것을 제안하였다. 2단계에서는 성인지 예산서 작성기관을 점차 확대하되, 제도의 정착 여부를 판단하여 모든 중앙관서에서 작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성인지 예산의 분석단위는 성별 영향분석의 적절성과 사업관리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세부사업 단위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분석 방법은 4단계 과정모형을 제시하였으며, 이 모형에 의해 보건 복지부의 사업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시도하였다.

주제어: 성인지 예산, 성별분리통계, 양성평등정책예산, 프로그램 예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이 연구는 「성인지 예산 분석기법 개발 및 제도적 인프라 구축방안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내용 중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1. 머리말

국가재정법이 2007년 1월 발효됨으로써 2010회계연도 예산부터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 작성이 의무화되었다. 국가재정법(제16조)은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6조는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여성운동단체에 의해 성인지 예산이 의제화되는 단계를 거쳐 국가재정법에의 반영을 통해 이제 제도화되는 단계를 맞고 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1984년 호주에서 여성예산 프로그램(Women's Budget Program)으로 처음 시행된 이후 현재 세계 60여개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최근에 성인지 예산의 개념 및 분석방법론 등이 체계적으로 정립되고 있지만 성인지 예산제도는 아직 정형화된 틀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별 재정운용체계의 성격, 성 평등의식의 수준,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방식에 따라 다양한 제도적 틀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성인지 예산제도의 틀이 각 국가의 재정운용체계에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노무현 정부는 재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소위 “3+1”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즉,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 성과관리(예산)제도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의 도입이다. 그 중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에는 프로그램 예산제도, 재정범위의 재설정, 복식부기·발생주의회계제도의 도입과 통합재정정보시스템으로서의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구축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재정의 제도적 인프라의 구축은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을 용이하게 해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2007년부터 공식 가동된 프로그램 예산제도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은 국가재정법에 규정한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및 제출을 도와주는 제도적 기반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예산제도에서의 성인지적 분석을 수행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전략 및 분석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프로그램 예산제도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에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성인지적 예산분석을 위해 보건복지부 프로그램 예산체계에서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 국가재정운용체계와 성인지 예산 분석

1) 국가재정운용체계와 성인지 예산제도

국가재정운용체계는 정책과정과 예산과정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체계이다. 거의 모든 정책 또는 사업에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며, 예산과 정책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따라서 정책과정과 예산과정은 서로 연계되어 있다. 예산주기의 각 단계별로 성인지 예산제도는 <표 1>과 같이 연계된다.

〈표 1〉 정책과정 및 예산과정과 성인지 예산제도의 연계

정책 과정	예산 과정	담당 기관	예산 업무	성인지 예산제도
기획 및 분석	예산 편성	기획재정부 각 부처	국가재정운용계획 정책·사업분석 및 세입예측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	거시적 정책의 성 별 영향 분석 정책 우선순위 결정
정책 형성			예산편성 기본지침 작성통보 예산요구서 제출 예산안의 사정 및 편성	성별 영향 분석
	예산 심의	국회	예비심사(상임위원회) 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인지 예산 심의
정책 집행	예산 집행	각 부처	예산 배정·자금 배정 지출원인행위, 지출, 회계처리	성별분리통계 모니터링
감사 및 평가	결산 및 회계 검사	감사원	회계검사	성인지적 감사 성별 영향 평가 성인지 성과평가 성인지 결산 심의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국회	결산 심의	

2) 성인지 예산의 개념 · 목적 · 범위

(1) 성인지 예산의 개념

성인지 예산¹⁾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설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학자들의 성인지 예산 개념은 대체로 일치되고 있다. Advisory Committee on Equal Opportunities for Women and Men(2003)은 “성인지 예산(Gender budgeting)은 예산과정에 대한 성 주류화의 적용이다. 즉 모든 수준의 예산과정에서 젠더 관점을

1) 성인지 예산의 용어는 영어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즉, gender budget, gender sensitive budget, gender responsive budget, gender aware budget 등이다.

결합하고 성 평등을 위하여 세입과 세출을 재구조화하는 것이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Budlender & Sharp(1998: 7)도 “성인지 예산은 여성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 여성과 남성의 다양한 집단에 대한 예산의 차별적 효과를 보여주기 위한 정부예산 분석이다. 성 평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예산으로 전환하지는 것이다. 성인지 예산은 기본적으로 젠더 이슈를 주류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젠더 관점에서 공공지출과 세입을 재배분하지는 것이다.”고 언명하고 있다.

학자들의 개념정의를 종합하면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정의는 “예산과정에서의 젠더 관점의 통합”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정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성인지 예산이 단지 여성을 위해 예산배분을 늘리는 것이 아니란 점이다. 또한 여성과 남성에게 예산을 50대 50으로 나누는 것도 아니다.

국가재정법(제26조)에서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앞에서 정의한 성인지 예산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그런데 국가재정법시행령(제9조)은 성인지 예산서는 성인지 예산의 개요, 성인지 예산의 규모와 기대효과 등을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성인지 예산 개념의 본래적 의미를 벗어난 측면이 있다. 여기서의 논쟁점은 성인지 예산의 규모를 산출할 수 있는냐의 문제이다. 성인지 예산 규모를 산출한다는 것은 성인지 예산을 여성예산 또는 현재의 양성평등정책 예산에 국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의 관점은 모든 예산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은 여성예산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2) 성인지 예산의 목적

성인지 예산서 작성이란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예산정보를 산출하는

것이며, 현행 재정운용체계를 활용하여 예산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인지 예산제도는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는 수준 이상의 의미를 갖는 제도이다.

Sharp and Broomhil(2002)은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정책과 재정운용에 있어서 성 평등에 대한 인식 제고, 둘째, 성 평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 강화, 셋째, 성 평등과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예산과 정책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의 목적을 광의로 확대하여 적용한다면 여성의 경제·사회적인 사회 참여 및 기여를 통한 국가 인적자본의 활용과 국가재정의 최적화 등을 들 수 있다.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목적이 성 평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예산과 정책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있다면 제도의 운용을 과정(process)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것은 모든 예산과 모든 예산과정에 성인지적 분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3) 성인지 예산의 범위

성인지 예산을 도입할 때 논란의 대상이 되는 이슈의 하나가 성인지 예산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이다. 성인지 예산의 범위는 성인지 예산의 개념, 목적, 분석방법 등과 관련된다.

기존의 문헌을 보면 성인지 예산의 범주를 ① 성 특정적 예산(Gender-Specific Expenditures), ② 공공 서비스 내에서 성 형평성(Gender Equity)을 추진하는 예산, ③ 일반예산(Mainstream Expenditures)으로 분류한 Budlender et.al(1998)의 틀이 많이 원용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분류방식은 성 특정적 예산과 성 형평성 예산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예컨대 여성예산으로 분류한 피임도구 배포, 아동보전 등이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구분이 모호한 경우 '성인지 예산'으로 산출된 예산액은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자들과 시민단체 등이 Budlender의 틀을 원용하여 분석한 바 있으나 최근에는 성 특정적 예산과 성 형평성 예산의 구분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이를 반영하여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에서는 성 특정적 예산과 성 형평성 예산을 합하여 양성평등정책예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2007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양성평등정책 대상사업은 예산서에 명시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양성평등정책 대상사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예산액을 산정하는 것은 일면 의미 있는 측면도 있다. 양성평등정책 대상사업이 여성의 지위 향상이나 개선 또는 양성평등에 기여하는 사업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부문의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점차 확대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필리핀의 GAD(Gender And Development) 예산 5% 확보 정책이 그러한 예에 속한다. 그러나 양성평등정책 예산의 증액은 철학적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예컨대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은 양성평등지향 예산이라고 볼 수 있으나 장애아동의 어머니를 가정에 속박하는 측면이 있음을 생각할 때 성 평등적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결국 양성평등정책 대상사업의 예산이 성인지 예산이라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양성평등정책의 예산규모를 성인지 예산규모로 보고 제시하는 것은 성인지 예산의 개념을 왜곡하게 된다. 성인지 예산의 범위에는 양성평등정책 예산뿐만 아니라 일반예산도 포함된다. 일반예산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되고 편성 및 집행될 수 있다. 성인지 예산은 모든 예산이 대상이 되며, 예산과정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을 결합하는 것이다.

3) 성인지 예산분석의 기본 관점

(1) 광의의 관점(Wide View)

성인지 예산은 성 특정 예산, 성 형평성 예산뿐만 아니라 주류예산을 포함한 모든 예산이 대상임을 앞에서 밝힌 바 있다. 이 때 모든 예산이라고 할 때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모든 예산과 기금이 포함된다. 이 경우 국제기준에 합치되는 재정범위를 의미해야겠지만 성인지 예산분석의 대상은 보다 광범위하다. 필요한 경우 일반정부 부문뿐만 아니라 공기업 부문 예산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분석의 대상은 중앙정부의 예산(기금 포함)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예산(기금)도 포함한다. 지방정부의 예산(기금)에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포함된다.

또한 세입과 세출이 모두 성인지 예산분석의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세출예산이 주된 성인지적 분석의 대상이지만 세입도 분석대상이 된다. 소득세 등 조세의 남성과 여성간 귀착의 정도를 판별하여 이를 개선하는 조치가 이에 해당된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의 전 과정에 걸쳐 적용된다. 성인지 예산분석은 성인지 예산 개념에서 보듯이 예산편성, 심의, 집행, 결산 및 평가(회계검사)의 예산 전 과정에 걸쳐 이루어진다. 예산의 전 과정에 성주류화가 통합되는 단계는 제도화 수준이 매우 높은 단계이다.

(2) 장기적 관점(Long View)

성인지 예산분석은 기본적으로 단년도 예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단년도 예산을 구성하고 있는 사업들은 여러 해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의 전 생애주기(life cycle)를 관리 및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사업이 착수된 이후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집행 결과를 평가하는 단계에서 성인지 분석을 수행한다.

성인지 예산분석은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재정운용에도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연동식 5개년 중기재정계획으로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운용되고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거시적이고 중기적 시각에서 계획 재정을 운용하는 제도이며 성인지 예산분석 대상이 된다.

(3) 과정과 결과(산물)의 포괄

성인지 예산분석은 결과물로서의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인지 예산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을 포함하며, 후자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의 목적 중에 성 평등에 대한 인식 확대가 포함되어 있음을 보았듯이 성인지 예산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에 성 평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 성 평등에 대한 인식의 제고는 실질적 예산배분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성인지 예산분석을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면 단계적 접근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단계 모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하다.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분석방법이나 각국에서 수행 중인 성인지 분석방법을 보면 대부분 단계적 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3.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성인지적 접근

1)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내용과 특징

(1)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기본구조와 특징

프로그램예산은 예산의 계획·편성·배정·집행·결산·평가·환

류의 전 과정을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그것을 성과평가체계와 연계시켜 성과를 관리하는 예산기법이다. 중앙정부는 2007년, 지방정부는 사업예산이라는 이름으로 2008년부터 공식적으로 도입되었다.

〈표 2〉 프로그램 예산의 구조

분야	부분	(실·국/과)	프로그램	(회계/기금)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비목	통계비목
기능	조직			회계분류			품목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 구조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① 조직 중심의 프로그램 구조: 중앙정부(실·국), 지방정부(과)
- ② 기능과 <프로그램-단위사업>의 연계
- ③ 모든 재정자원(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포괄되도록 설계
- ④ 조직의 성과목표, 성과평가 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
- ⑤ 기능별 분류체계의 통일

(2)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근거한 예산과목 체계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도입은 복잡했던 예산과목 체계를 단순화하고 체계화한 의미를 갖는다.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근거하여 개편된 예산과목 체계는 〈표 3〉과 같다.

〈표 3〉 예산과목체계의 개편 내용

종 전		현 행 (2007)		
①	26장 (예·기 공통 20, 기금별도 6)	대기능	① 16 분야	대기능
②	79관 (예·기 공통 66, 기금별도 13)	중기능	② 68 부문	중기능
③	977개 항 (예산 558, 기금 419)	소기능	③ 프로그램 (771)	실국별 프로그램
④	2,337개 세항 (예산 1,424, 기금 913)	대부분: 살·국 일 부: 사 업	④ 단위사업 (3,431)	프로그램의 세부사업
⑤	7,918개 세세항 (예산 6,356, 기금 1,562)	세부사업		
⑥	5,665개 세사업 (예산 5,665, 기금 0)	세부사업 (세세항의 지역별 분류 등)		세부사업 (8,831)
⑦	49개 목	예산편성비목	⑤ 편성비목 (23개)	예산편성시 판단비목
⑧	101개 세목	예산심의 및 집행비목	⑥ 통계비목 (90개)	예산통계 및 심의참고비목

2) 프로그램 예산제도에서의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방안

(1)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의 단계적 접근

국가재정법에 의해 2010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한다고 할 때 제도도입의 전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는 제도 정착의 중요

한 관건이다. 모든 부처의 모든 예산에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겠으나 성인지 예산제도는 성격상 그런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성인지 예산의 개념과 분석 방법론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단계적 접근이 가장 현실적이면서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판단된다.

여기서는 각국의 성인지 예산제도화 수준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성인지 예산제도화의 수준을 제도의 완성도에 따라 <표 4>와 같이 6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 수준을 <표 4>의 단계 모형에 적용한다면 현재 2단계 또는 3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학자들과 시민단체에 의한 성인지 예산분석은 아직 시범분석 단계(2단계)에 해당하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성인지 예산안 작성 지침을 포함하여 통보하고, 여성부에서 양성평등정책예산과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부분 적용 단계(3단계)에 해당한다. 국가재정법에 의해 2010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일반화 단계(4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아직 5단계와 6단계에 이른 국가가 없다는 점에서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된다.

〈표 4〉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 수준

순서	단 계	내 용	해당 국가
1단계	의제화 단계	워크숍, 토론회 등 성인지 예산의 의제화 추진	캐나다, 이스라엘
2단계	시범분석 단계	방법론, 도구개발 등을 통한 시범분석	남아프리카,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벨기에, 독일, 아일랜드, 이태리,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아이슬란드
3단계	부분적용 단계	예산편성 지침을 제공하여 분석결과를 부분적으로 예산 과정에 반영	탄자니아, 우간다, 샌프란시스코
4단계	일반화 단계	부처간 조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다양한 부처에서 예산편성시 젠더분석을 수행하고 예산서를 작성	호주,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인도, 필리핀,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모로코
5단계	제도통합 단계	예산편성-심의-집행-평가 등 예산주기로의 통합	해당 국가 없음
6단계	성과 단계	예산배분 구조의 실질적 변화 실현	해당 국가 없음

자료: 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예산 연구단(2007b: 13-14)에서 재구성함.

① 단계적 접근의 고려요인

가. 성인지 예산서 작성 기관의 범위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중앙예산기관인 기획재정부가 성인지 예산서가 포함된 정부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시행령(제10조)에 의하면 모든 중앙관서가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할 정부의 성인지 예산서에는 모든 중앙관서의 성인지 예산분석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는 없다.

여기서 성인지 예산서 작성 기관의 범위를 모든 중앙관서(1안)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일부 중앙관서(2안)부터 시작할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가 대두한다. 성인지 예산분석의 대상이 모든 예산사업이라고 볼 때 1안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예산편성에 관한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 도입의 목적을 감안하면 처음부터 모든 중앙관서가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도입 초기단계에서는 성별분리통계의 생산가능성, 성인지 예산분석의 전략적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일부 중앙관서에서 먼저 시작하고 점차 확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오스트리아는 모든 부처가 1개 사업을 대상으로 성인지 예산분석을 하게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부 부처를 중심으로 성인지 예산분석을 하고 있다. 스웨덴은 교육, 문화, 보육, 노인, 가정폭력 등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고 있으며, 남아프리카는 노동, 복지, 주택, 공공서비스, 보건, 농업, 치안 등 27개 중앙부처에서 분석을 하고 있다. 핀란드는 보건복지부, 독일은 청소년프로그램과 연금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성인지 예산서 작성의 대상기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다.

- (1안) 모든 중앙관서가 성인지 예산서 작성
- (2안) 일부 중앙관서만 성인지 예산서 작성

나. 각 기관의 대상사업의 범위

성인지 예산서 작성 기관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그 기관의 모든 예산사업(1안)을 대상으로 성인지 예산분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일부 사업(2안)을 대상으로 분석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그 보다 먼저 예산사업의 분석단위를 프로그램 구조의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중 어

는 사업단위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하지만 어느 사업단위로 하든 성별분리통계의 생산가능성, 성인지 예산분석의 전략적 필요성을 감안할 때 일부 사업(2안)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건복지가족부의 프로그램 구조를 보면 프로그램 45개, 단위사업 270개, 세부사업 552개가 있다. 성인지 예산분석은 주로 세부사업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일부 단위사업 단위에서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일부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다가 점차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데 일부 사업을 먼저 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는 성인지 예산분석 대상사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 〈1안〉 모든 예산사업(세부사업)을 대상으로 분석
- 〈2-1안〉 각 실·국 단위에서 1개 예산사업(세부사업)을 대상으로 분석
- 〈2-2안〉 일부 예산사업(세부사업)을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분석

다. 분석수준

본 연구에서는 성인지 예산분석의 틀을 4단계 과정 모형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각 단계별 분석을 할 때 사업의 성격이나 여건에 따라 분석 수준이 다를 수 있다. 초기 단계에서는 성별분리통계를 보여주는 수준의 낮은 수준의 분석에 머물 수 있다. 그러나 점차 질적으로 고도화되고 체계화된 수준으로 분석수준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 등에 의해 성별영향평가나 분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분석수준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② 단계적 접근의 내용

2010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완벽하게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단계적 도입의 시기는 3단계로 구분하며, 1단계는 2010회계연도 예산편성 시기, 2단계는 1단계 시행 이후 2~3년 정도 지난 뒤의 시행 시기, 3단계는 중장기적 과제로 본다.

가. 1단계

1단계에는 성인지 예산서 작성기관을 일부 중앙관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모든 중앙관서를 대상으로 시행하기에는 준비기간이 너무 짧고 기관에 따라서는 성인지 예산분석의 전략적 필요성이 덜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기관을 선정할 것인가는 여성정책기본계획, 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한 기관 등을 참조하여 여성부 또는 기획재정부가 선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성인지 예산서 작성기관을 연도별로 확대해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성인지 예산분석 대상사업은 선정된 기관의 각 실·국별로 1개 사업을 의무적으로 선정하여 분석하게 하는 방식(1안)과 몇 개의 사업을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분석하는 방식(2안)을 제안한다. 2안의 경우 선정기준으로서 성별분리통계의 가능성과 성 평등 분석의 전략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분석수준은 기본적으로 낮은 수준의 분석을 수용한다. 낮은 수준의 분석이란 성별분리통계를 생산하고 성별 격차를 확인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양성평등 목표를 설정하는 수준의 분석이다. 아직 성별분리통계마저 제대로 갖추지 못한 현 실정을 감안할 때 성별분리통계만이라도 생산해낸다면 초기단계의 분석으로서 만족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1단계에서는 낮은 수준의 분석을 수용하되, 좀더 높은 수준의

분석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병행한다.

나. 2단계

2단계는 2010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이후 2~3년 정도 지난 시기를 지칭하지만 매년 연차적으로 발전시켜가는 것을 포함한다. 2 단계에서는 성인지 예산서 작성기관을 점차 확대하되(1안), 제도의 정착 여부를 판단하여 모든 중앙관서에서 작성(2안)하도록 한다. 그러나 2단계에서 곧바로 모든 중앙관서가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2안)하도록 할 수도 있다. 공무원들이 성인지 예산의 개념과 제도의 취지를 이해 하게 하는 데에는 2안의 방식이 더 유리할 수 있다.

대상사업의 선정과 관련해서는 1단계에서 어느 방식을 택하든 간에 2단계에서는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한다. 물론 대상사업을 확대할 때에 성별분리통계의 가능성과 성평등 분석의 전략적 필요성을 고려 하여 선정해야 할 것이다.

분석수준 측면에서는 1단계에서의 학습효과를 참작하여 기본적으로 높은 수준의 분석을 해야 한다. 높은 수준의 분석이란 성별 통계에서 정책적 함의를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시행계획을 수립 하여 예산안에 반영하는 수준을 말한다. 높은 수준의 분석은 심층적 성별영향평가 등의 분석 보고서가 만들어진 경우 이를 참조하여 분석 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일부 대상사업의 경우 낮은 수준의 분석에 머물 수 있으며, 이 경우 낮은 수준의 분석을 병행한다.

다. 3단계

여기서 3단계란 성인지 예산제도화 수준의 5단계(제도통합 단계)와 6단계(성과 단계)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중장기적 과제에 해당한다. 성인지 예산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공무원들의 성인지적 관점에 대

한 의식이 성숙된 시기를 말한다.

이 단계는 예산편성-심의-집행-평가 등의 예산주기에 성 주류화의 관점이 통합되는 시기를 지칭하기 때문에 모든 중앙관서가 성인지 예산서 작성의 대상기관이 된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분석이 필요한 각 기관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분석대상이 된다. 분석수준과 관련하여서는 그동안의 분석 방법의 발전과 축적으로 인해 고도화된 분석이 수행되며, 예산배분 구조의 실질적 변화가 실현된다.

〈표 5〉 단계별 접근의 추진방식

시기		작성기관 선정	대상사업 선정	분석수준
1단계	2009~	일부 중앙관서	〈1안〉 각 실·국별 1개 사업 〈2안〉 대상사업 자체 결정(5~10개)	낮은 수준의 분석 -높은 수준의 분석 부분 병행
2단계	2~3년후	〈1안〉작성기관 확대 〈2안〉모든 중앙관서	대상사업의 지속적 확대	높은 수준의 분석 -낮은 수준의 분석 부분 병행
3단계	중장기 과제	모든 중앙관서	대부분의 사업	고도화된 분석

(2) 성인지 예산적용 대상사업 선정 기준

① 성별분리통계의 구축 및 구축 가능성 여부

가. 가능 사업: 기 구축 사업/ 구축 필요 사업

개인단위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개인단위 사업과 가구단위로 자료 수집이 가능한 사업 모두 성별분리통계 수집과 산출이 가능한 사업이다.

나. 불가능 사업

개인이나 가구단위가 아닌 집합단위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예를 들어, 기업 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나 각종 인프라 구

축 사업 등이 포함된다.

② 성인지 예산분석의 전략적 필요성 정도

가. 성별영향에 대한 분석이 이미 이루어진 사업

-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²⁾
- 성별영향평가 이외의 여타 양성평등분석 등을 통해 성 불평등이 지적된 사업

나. 국가의 주요 정책방향과 정합성이 높은 사업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의 주요 목표들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
-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의 주요 목표들과 정합성이 높은 사업

다. 부처 내에서 현실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사업

-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거나 사업 지속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사업

〈표 6〉 성인지 예산 적용 대상 선정 기준

		성 인 지 예 산 분 석 의 전 략 적 필 요 성		
성 별 분 리 통 계		성별영향에 대한 분석이 이미 이루어진 사업	국가의 주요 정책들과 정합성이 높은 사업	예산규모가 크고 사업기간이 긴 사업
	기 구축	1	2	3
	구축필요	4 ↑	5 ↑	6 ↑
	구축 불가능	추후검토	추후검토	추후검토

주: 성별분리통계 구축필요 사업의 경우 분리통계가 구축되면 바로 윗 단계로 진입 가능함.

2) 현재 성별영향평가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별에 따라 수혜 편차가 크거나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 주요 양성평등 관련 지표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기관장이 성별영향평가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3) 성인지 예산의 분석단위와 보고단위

① 성인지 예산의 분석단위

2007년 예산안에서 양성평등정책예산사업의 단위를 보면 프로그램 수준에서 설정된 중앙행정기관(예: 노동부)도 있고, 단위사업 수준에서 설정된 기관(예: 교육부, 보건복지부)도 있으며, 세부사업 수준에서 설정된 기관(예: 행정자치부)도 있다.

그러나 성별영향분석의 적절성과 현행 사업관리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성인지 예산의 분석단위는 세부사업 단위로 할 것을 제안한다. 동일한 프로그램이나 단위사업 내에서도 세부사업별로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를 수 있기 세부사업을 성인지 예산 분석단위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세부사업 간에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위사업 또는 프로그램 단위에서 분석하는 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생계급여와 자활급여는 상호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므로 함께 연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실시되면서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이 구축되어 세부사업 단위로 DB를 통해 사업의 전 과정(life-cycle)에 대해 관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세부사업을 분석단위로 할 때 양성평등 영향력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과 관련요인에 대한 세부적 고려가 가능하다.

② 각 부처 성인지 예산서 보고단위

각 부처 예산사업의 성인지 분석은 세부사업 단위로 하되, 각 부처별 통합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 및 보고할 때에는 프로그램 단위로 종합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프로그램 45개, 단위사업 270개, 세부사업 552개인 점을 고려할 때 성인지 분석 적용

대상사업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총체적 자원배분의 시각에서 프로그램 단위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이 부분은 성인지 예산서 형식체계와 관련하여 좀더 연구해볼 과제이다.

(4)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에의 연계

①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구성도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 System)은 예산편성, 집행, 회계·결산, 평가 등 재정 전체 업무처리가 동일한 시스템에서 이루어지고 관련 정보가 생성되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이다.



〈그림 1〉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의 구성도

② 사업관리시스템과 세부사업

사업관리시스템은 각 부처 사업의 사업등록부터 사업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모든 재정업무의 라이프 사이클을 처리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사업관리시스템에서는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의 현황을 조

회할 수 있으며, 세부사업 정보가 중심이다. 세부사업 조회 화면은 다음 그림과 같으며, 사업개요, 부가정보, 연차별 투자계획, 관리자 정보, 첨부파일 정보가 들어 있다.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는 세부사업 현황 조회에서 현재 ‘양성평등 정책예산’ 대상사업인지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인지의 여부를 체크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상에 현재 관련 정보는 입력되어 있지 않다.

앞으로 도입될 성인지 예산분석 정보는 사업관리시스템의 세부사업 현황에 새로운 항목을 설정하거나 부가정보란에 하나의 항목(‘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구체적인 시스템 보완 작업은 현재 수행 중인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고도화 사업에서 수행할 예정이다.



〈그림 2〉 세부사업 현황 조회 화면

3) 성인지 예산분석의 방법: 과정 모형

성인지 예산분석을 시행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분석방법으로서 단계적 접근을 하는 과정 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성인지 예산분석 모형으로 4단계 모형을 제시한다.

〈표 7〉 성인지 예산 분석의 과정 모형

단계		분석내용
1	성인지적 분석 필요성에 대한 부처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기관과 담당조직 • 논의의 주요 내용 • 성인지 분석 관련 주요 장애요소 • 성인지 분석이 조직의 업무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 • 성인지 분석을 위한 교육훈련 계획에 대한 논의나 구체적 계획내용
2	양성평등 실상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분리통계의 제시 • 성별분리통계에 근거한 성인지적 분석의 결과
3	성인지적 사업목표와 성과지표 설정 및 세부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적 사업목표 제시 • 성인지적 성과지표 제시 •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4	예산안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적 분석 결과 반영의 내용 • 성별 예산배분의 실태 제시

4. 성인지적 예산 분석 사례: 보건복지부 예산

1) 성인지 예산 적용 대상사업 선정: 선정기준의 적용 (예시)

〈표 8〉 성인지 예산 적용 대상사업 선정 사례

		성인지 예산 분석의 전략적 필요성	
성 별 분 리 통 계		성별영향에 대한 분석이 이미 이루어진 사업 ¹	국가의 주요 정책들과 정합성이 높은 사업 예산규모가 크고 사업기간이 긴 사업
	기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관리 사업 • 노인일자리 사업 <i>(성별분리통계 미흡, 부분적인 통계구축)</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지급사업 • 의료급여지급사업 • 생계급여지급사업 〈2단계 대상사업〉 현재는 없음 〈3단계 대상사업〉
	구축 필요	〈1단계 대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근로사업 • 장애인자립자금융자사업 등 〈4단계 대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차량 LPG 지원사업 •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등 〈5단계 대상사업〉
	구축 불가능 ³	현재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송국제바이오하이테크 박람회지원사업 • 의료장비현대화사업 • 국립암연구소지원사업 • 혈액안전정보재난복구센터구축사업 등

2) 성인지 예산분석 사례: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1) 성인지적 분석 필요성에 대한 부처 내 논의

- 이 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예산분석 필요성을 논의하였는가? □ ← 체크
- 논의한 바, 아래의 내용을 입력하십시오.

① 담당기관과 담당조직

- : 저출산고령화 대응팀내 예산담당관
- : 향후에는 저출산고령화 대응팀내 성인지 예산업무담당관

② 논의의 주요 내용

- :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예산분석이 필요한가?
- : 노인일자리 사업의 실행에 있어서 성별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는가?

③ 성인지 분석 관련 주요 장애요소 입력

- : 성인지적 예산분석에 대한 기초지식의 부족
- : 성별분리통계의 포괄성 미비
- : 성별 이외의 다른 관련요인들에 대한 정보 부족

④ 성인지 분석이 우리 조직의 업무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입력

- : 노인관련 정책사업 계획과 평가시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의식 제고

⑤ 성인지 분석을 위한 교육훈련 계획에 대한 논의나 구체적 계획내용 입력

- : 연 2회 이상 예산담당관과 관련 책임자 교육프로그램 참여 계획
- : 2007년 하반기 한국양성평등교육원, [성인지예산편성 교육과정] 참여 계획
- : 2008년 상반기 한국보건인력개발원, [보건복지 사업기획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 적용 교육과정] 참여 계획



(2) 양성평등 실상 분석

- 성별분리통계의 제시³⁾ (가상적 수치임)

	남성노인	여성노인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가능 연령대 인구비율 (65이상~80세미만)	43.9%	56.1%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총 인원: 47,300명)	52%	48%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취업자 (총인원: 38,000명)	49%	51%

- 성별분리통계에 근거한 성인지적 분석의 결과 입력

① 주요 성불평등 현황 설명

: 일자리 사업 참여 가능 인구에서의 성비는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12%가량 높은 반면, 실제 일자리 사업 참여 인원의 비율에서는 남성노인의 참여가 4% 높게 나타남. 여성노인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서 남성노인에 비해 진입장벽을 더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됨.

② (추가적) 주요 관련요인 설명

: 일자리 사업 참여자중 취업자 비율에서는 여성노인의 취업률이 남성노인에 비해 높으나, 일자리 사업의 유형별로 남녀 노인의 취업률을 비교해보면, 근로조건이 양호한 공익형 일자리나 교육형 일자리에선 남성노인의 취업률이 높은 반면 고용불안정성이 높고 임금수준이 낮은 복지형 일자리에 여성노인의 취업률이 높게 나타남. 이를 보면 참여일자리 유형별 성별 불균형 분포가 이 사업의 성별 불평등에 주요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이에 관한 포괄적인 통계치가 부재하여 추가적인 분석이 어려움.

: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에 영향을 주는 (성별외) 다른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들과 성별차이를 교차 분석할 필요성이 큼



3) 전국 단위로 정확한 성별분리통계가 수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표 안의 수치는 표본조사를 통한 연구에 근거하여 대략적으로 환산한 가상적 수치이다.

(3) 성인지적 사업목표와 성과지표 설정

- 성인지적 사업목표 입력
 - : (단기목표) 여성노인이 경험하는 일자리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적극적으로 제거하여 사업 참여율에 있어서 성별 차이를 감소시킨다.
 - : (중장기 목표) 일자리 사업의 유형별 참여율에서 성별차이를 적극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취업유지기간, 월평균 소득, 취업만족도에 있어서 성별 차이를 감소시킨다.
- 성인지적 성과지표 입력
 - : (단기지표) 일자리 사업 참여율에 있어서 성별차이
 - : (중장기 지표)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참여노인의 성별차이, 도시근로자평균임금 30%이상 소득을 버는 참여노인의 성별차이



(4) 예산안 반영

- 성인지적 분석 결과 반영의 내용
 - : 여성노인의 일자리 참여시 진입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일자리 사업참여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가족원 돌봄 서비스, 가사간병 서비스 등) 지원을 연계함.
 - : 참여대상 선정 기준에 있어서 여성노인의 공익형 사업 참여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함.

• 성별 예산배분의 실태 제시(가상적 수치임) (단위: 백만원)

분야 - 부문 - 프로그램 - 단위사업	2007년 예산안		2008년 예산안		증감	
	남	여	남	여	남	여
사회복지 노인청소년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지원	39143 (52%)	36132 (48%)	47500 (50%)	47500 (50%)	8357 (21% ↑)	11368 (31% ↑)
	75,275		95,000		19,725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예산제도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활용하여 성인지적 분석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제시한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방안은 단계적 접근이다. 1단계에서는 일부 중앙관서를 중심으로 일부 대상사업 또는 각 실국별 하나의 사업을 대상으로 낮은 수준에서 분석할 것을 제안하였다. 분석 방법은 4단계 과정모형을 제시하였으며, 이 모형에 의해 보건복지부의 사업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과정 모형은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목적과도 관련이 있다. 궁극적으로는 성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예산 및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지만 성 평등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정부의 책임성 강화도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 몇 가지 장애요인이 존재한다. 첫째, 공무원들의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 또는 무관심이다. 왜 성인지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거나 부정적 견해를 갖는 경우도 많다. 여성운동단체와 여성 국회의원이 중심이 되어 국가재정법에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을 의무화하였으나 정부 부처 내에서의 공감대는 부족한 편이다. 특히 예산편성의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마저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둘째, 성별분리통계와 같은 통계 인프라가 극히 취약하다.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의 관건은 성별분리통계 등의 성인지적 정보가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냐이다. 통계 생산기관의 성인지적 정보 생산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꾸준히 정보를 축적해갈 필요가 있다. 셋째, 추진주체의 리더십 문제이다. 현재 여성부가 성별영향평가 등 성인지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정부부처 내 인식의 확산과 사회적 인식의 확산에 크게 역할을 못하고 있다. 더욱이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여성부, 여성정책연구원 등이 T/F 팀을 구성하여 우리나라의 재정운용체계에 적합한 제도를 설계하고 이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외에 국회, 감사원, 통계청, 시민단체, 전문가 그룹 등이 후원하는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원고접수: 2008. 10. 28. 게재확정: 2008. 12. 6)

참고문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예산 연구단(2007a), 『성인지 예산의 개념과 분석도구』, 성인지 예산 제도화 1차년도 연구사업 연구진 워크샵 자료집.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예산 연구단(2007b), 『성인지 예산 제도의 다양성과 정책적 선택』, 제4차 성인지 예산 제도화 연구포럼 자료집.
- Advisory Committee on Equal Opportunities for Women and Men.(2003), *Opinion Gender Budgeting*.
- Budlender, Debbie and Guy Hewitt(2003), *Engendering Budgets: A Practitioners' Guide to Understanding And Implementing Gender-responsive Budgeting*, Commonwealth Secretariat.
- Budlender, Debbie and Rhonda Sharp(1998), *How to Do a Gender-Sensitive Budgets Analysis: Contemporary Research*

and Practice, the Commonwealth Secretariat.

Centre for Democracy & Development(2005), *A Handbook on Budgeting - A Guide to The Due Process Approach*, Centre for Democracy & Development.

Schmitz, Catharina(2005), *Gender Responsive Budgeting in the Nordic Countries: The Scandinavian Experience: Barriers, Results and Opportunities*.

Sharp, Rhonda and Ray Broomhill(2002), "Budgeting for Equality: The Australian Experience", *Feminist Economics*, 8(1).

〈Abstract〉

Strategies on Introducing Gender Budgeting under the Program Budgeting Systems

Young-Jin Yoon

Eun-Jeong Kim

This study explores effective strategies to perform gender budget analyses and to institutionalize gender budgeting under the program budgeting systems. Because gender budgeting means re-structuring all revenues and expenditures from the point of gender equality view as well as increasing budget shares for women, gender budgeting should deal with all sorts of budgets not just budget on women and family. By the same token, gender budgeting should include analytic processes on contents of budgeting from the view of gender equality not just producing final forms of gender budgeting.

This study proposes “phased approaches” as major strategies to introduce gender budgeting under the program budgeting systems. Phased approaches might be more appropriate than others because the main concepts and analytic methodologies of gender budgeting are not yet fully established in Korean society. At the first stage, we proposes the lower level of gender budget analyses on the

small share of policy programs performed by some (not all) departments of central government. Then, the range of departments should be expanded ended up to all the department of central government at the second stage. Also, 'Program Element' would be the most proper as the unit of analysis, considering the appropriateness of gender impact analysis and connectedness of digital budget and accounting systems with gender budgeting.

Phased approaches of fourth stages are suggested as analytic strategies for gender budgeting in this study. This study actually tried to case analyses on several programs by Department of Health and Welfare in Korean central government. We found phased approaches are useful because gender budgeting should aim to increase the public accountability on gender equality and the level of awareness of the public as well as to induce the changes of budget frames for increasing gender equality.